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95 |
|----------|-----|

2009년 7월 10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6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결과 :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(2009년 6월 25일)상정 · 의결(수정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 순 구)

□ 제안이유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,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조정함(안 제4조제4항).
- 나.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2).

- 다.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직권면직 기준을 변경함(안 제9조).
- 라.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 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(안 제11조).
- 바.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).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 용 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일반직 및 기능직 신규임용 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,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,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, 휴직의 효력 관련 규정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('08. 12.)사항을 반영하고, 근무성적평정 실시의 근거 규정 마련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('09. 2. 24)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참고자료 ①).

< 추진 경위 >

- 2009. 2. 24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(표준안) 일부개정안 통보(행정안전부)
- 2009. 4. 15 「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」 일부개정계획(부시장방침 제182호)
- 2009. 4. 30. ~ 5. 20 입법예고

-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서울시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5급 이상 27명, 6급이하 108명 등 총135명이 근무하고 있음(참고자료 ②).

가.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 조정(안 제4조제4항)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중 제4항의 신규임용 연령규정을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관계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인사규칙(일반직 및 기능직)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, 금번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지방공무원인사규칙 표준안 개정(2009. 1.30자)시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임용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연령규정을 완화하였음.(단, 7급 이상 20세 이상)

| 구 분 |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|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(현행)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신규임용 최저연령 | 1. 일반직 7급 이상 : 20세 이상 8급 이하 : 18세 이상 2. 기능직 18세 이상 | <별정직> 5급 상당 제한없음 6·7급 상당 22~40세 8·9급 상당 18~40세 복지상담원 등 25~40세 | <별정직> 7급 상당 이상 : 20세 이상 8급 상당 이하 : 18세 이상 |

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직위에는 외국인이 임용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로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외국인이 보안이나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통상·교류·관광 등 전문 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, 보다 효과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다.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직권면직 조항 변경(안 제9조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9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<u>다음 각호의 1에</u>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| 제9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고, 그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|

- 개정안은 현행 “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” 직권면직 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을 “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고, 그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”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그러나 「복무조례」 제17조에서 휴가로 규정하고 있는 연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의 휴가일수 만큼만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기간이 현행보다 줄어드는 독소조항이라 할 것임.
 - ※ 연가 최대일수: 21일, 병가 최대일수: 60일(공무상 180일)
- 본 조항은 1985년 제정할 때부터 규정되어 있던 조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병역 및 육아만 휴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생기는 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경과를 두어 면직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,
- 본 개정안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된다고는 하나,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인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1항제1호와 제64조 1호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신체·정신상 장애의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「지방공무원법」

제63조(휴직)

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
제64조 (휴직기간)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(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) 이내로 한다.

라.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(안 제10조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0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1.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</p> <p>2. 형사사건으로 기속된 때(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)</p> | <p>제10조(휴직 및 인사관리)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p> |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 제63조제2항4호에 의해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휴직하는 경우는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안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며,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4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만6세 이하 취학 전에 해당할 경우 법정휴직기간의 범위안에서 분할 사용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 - ※ 제64조제8호 :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(여자공무원 3년) 이내로 한다.
- 이는 현재 달리 규정(분할 휴직 규정 없음)되어 있는 별정직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의 사항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(「지방공무원법」에 의거) 동일하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, 현재 서울시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여성은 53명임.

< 별정직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(2009년 6월 10일 현재) >

(단위 : 명)

| 연령 | 총계 | 남자 | 여자 |
|-------|-----|----|----|
| 계 | 135 | 82 | 53 |
| 21~30 | 1 | 1 | 0 |
| 31~40 | 47 | 19 | 28 |
| 41~50 | 45 | 24 | 21 |
| 50~ | 42 | 38 | 4 |

마. 휴직의 효력을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명문화(안 제11조)

- 또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5조의 휴직의 효력에 대한 일반규정을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
|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5조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65조(휴직의 효력)</p> <p>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<u>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</u>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휴직기간이 끝난</u>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.</p> | <p>제11조(휴직의 효력)</p> <p>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<u>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</u>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휴직한</u> 별정직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</p> |

-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서는 휴직기간 중의 휴직 사유 소멸과 관련된 효력에 대한 규정이며, 제3항은 휴직기간의 종료와 관련된 효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, 안 제11조제3항은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될 뿐 아니라 "휴직기간이 끝난 경우의 복직 효력"에 대한 법제3항의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춘 조문의 보완이 요망된다 할 것임.

바.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 신설)

-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 평정을 실시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근거없이 반영해 왔으나, 금번 제12조로 신설하여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평정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사. 기타 사항

- 기타 제명 띄어쓰기 등 상위법령 인용내용 및 조항 등의 명확화를 위한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」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(질의) 외국인의 채용에 있어서는 신원조회 등 투명하고 능력에 맞는 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.
(답변) 여러과정에서 철저한 스크린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임.
- (질의) 개정안 제11조 2항의 내용과 3항의 내용이 차이가 없어 지방 공무원법과 같이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국장의 의견은?
(답변) 전문위원 검토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(질의)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개정이라 한계가 있지만 휴직제도는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개정 건의 의향은?
(답변) 타당한 지적이라 사료되며 향후 휴직제도에 대한 법 개정 건의 등 별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8명, 전원일치)

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에 맞춘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안 제11조제2항 중 “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”을 “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”으로, 안 제11조제3항 중 “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”을 “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”으로 수정함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95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09년 7월 10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개정안 제11조제3항은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될 뿐 아니라 “휴직기간이 끝난 경우의 복직 효력”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3항의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안 제11조제2항 중 “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”을 “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”으로, 안 제11조제3항 중 “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”을 “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”으로 함.

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수정안 대비표 : 따로 붙임.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”을

“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”으로,

안 제11조제3항 중 “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복귀
신고를 한 때에는”을

“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
하면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-|--|---|
| <p>제11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) ① 별정직 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</p> | <p>제11조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<u>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</u>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</u> 당연히 복직된다.</p> | <p>제11조(휴직의 효력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<u>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</u>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</u> 당연히 복직된다.</p> |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대하여는 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임용권자) 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“별정직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용한다.

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.

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다.

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비서관, 비서를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시의회 전문위원(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)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
2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
3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4. 5급 공무원이상 된 자로서 공무원 경력이 8년 이상인 자
5.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6.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된 자로서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7. 그 밖에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20세 이상
2.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18세 이상

⑤ 재직 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·하위계급 또는 동일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13조(중전의 제12조)부터 제15조(중전의 제14조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임용절차 등)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근무상한 연령)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제8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9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 17조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고, 그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4.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휴직 및 인사관리)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.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4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<u>조례</u> |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<u>조례</u>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(이하 "법"이라 한다.)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"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.)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2조(적용범위)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하여는 국가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 | 제2조(적용범위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②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대하여는 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|
| 제3조(임용권자) ① 별정직공무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 ② 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. | 제3조(임용권자) ①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(이하 "별정직공무원"이라 한다)은 시장이 임용한다. ② 제1항의 임용이란 신규임용, 전보, 휴직, 복직,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. |

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② 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(비서관, 비서를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시의회 전문위원(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)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

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자

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자

라. 5급 공무원이상 된 자로서 공무원 경력이 8년 이상인자

마.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

바.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된 자로서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자

사.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

제4조(임용자격) ①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다.

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(비서관, 비서를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시의회 전문위원(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)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2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자

3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
4. 5급 공무원이상 된 자로서 공무원 경력이 8년 이상인 자

5.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
6.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된 자로서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

7. 그 밖에 임용권자가 위 자격기준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

다음과 같다. 다만, 여성복지(가정) 상담원의 경우 25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되, 상담원 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제한없음.

2. 6, 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22~40세

3. 8,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18~40세

⑤ 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·하위계급 또는 동일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5조(임용절차 등)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다음 각 호와 같다.

<단서 삭제>

1.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20세 이상

2.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: 18세 이상

<삭 제>

⑤ 재직 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·하위계급 또는 동일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 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

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절차 등)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,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근무상한 연령)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제8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9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

제7조(근무상한 연령)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 다만,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.

제8조(당연퇴직)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9조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7조에 따른 휴가를 신청하고, 그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
3.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

없을 때

4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
2. 형사사건으로 기속된 때(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)

제11조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)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

없을 때

4.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0조(휴직 및 인사관리)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

④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

제11조(휴직의 효력)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

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간내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

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휴직기간이 끝난 별정직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.

< 신 설 >

제12조(근무성적의 평정)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3조(징계)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13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)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